

2024년 제8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4. 9. 27.(금) 14:00
-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UFS20빌딩 9층 회의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4년 제8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소집 통보일 : 2024. 9. 19.	
이사 정수 : 8인	재적이사 : 8인
감사 정수 : 2인	재적감사 : 2인

1. 일시 : 2024년 9월 27일(금) 14:00~16:00

2.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UFS20빌딩 9층 회의실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이사 : 김종철, 김동건, 김호정, 문휘창, 박정운, 양인집, 이돈구, 최맹호
- 불참 이사 : 없음
- 참석 감사 : 윤규섭
- 불참 감사 : 배한영

4. 안건

가. 심의안건

- (1) 학교법인 감사 선임(안)
- (2)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총원 계획(안)
- (3)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
- (4)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 (5) 한국외국어대학교 위치변경계획 인가 관련 자문 용역계약 체결(안)
- (6)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제 개편(안)
- (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 (8)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나. 보고사항

- (1)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선출제도 관련 사항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	-----	---	-----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종철 의장(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이태욱 법인사무처장이 재적이사 8인 중 8인 참석으로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 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4년 제8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6. 전회 이사회 회의록 승인

- 김종철 의장이 전회 회의록 보고를 요청하자, 이태욱 법인사무처장이 보고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전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7. 회의내용

가. 심의안건

(1) 학교법인 감사 선임(안)

- 김종철 의장 :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이태욱 법인사무처장 : 윤규섭 감사의 임기가 2024.12.02.자로 만료 예정이므로 후임 감사를 선임하고자 함. 후임 감사로는 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회계사로 재직 중인 장혜운 후보자를 제청하였으며, 임기는 2024.12.03.부터 3년간 선임하게 됨을 설명함.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윤규섭 감사의 후임으로 장혜운 후보자를 선임하겠음을 문자,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장혜운 후보를 감사로 선임·의결하다.

□ 감사 선임 명단

선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임기	비고
감사	장혜운	여	2024.12.03. ~ 2027.12.02.	신임, 공인회계사, 윤규섭 감사 후임

간인(서명)	김종철		이태욱
--------	-----	---	-----

(2)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총원 계획(안)

- 김종철 의장 :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유덕근 서울교무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 모집 확대 시행 및 융합전공 제1전공 이수 제도화에 따라, 자유전공학부 소속으로 서울캠퍼스 1명, 글로벌캠퍼스 1명 등 2명의 교원을 총원하고자 함을 설명함.
- 이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총원 분야를 과학사 1명, 인지심리학 1명으로 제출했지만 학교에서는 인지심리학의 경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심리학 전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므로 총원분야에 대해서는 학교에 일임하도록 요청함.
 - 심리학 전반으로 확대하여 훌륭한 교원을 초빙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다만, 캠퍼스별 특성을 고려한다면 글로벌캠퍼스에 과학사, 서울캠퍼스에 심리학으로 총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 있음.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심의안건 제2호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총원 계획 승인사항

(가) 총원 학과 및 인원

학과(부)	트랙	배정인원	총원분야	비고
자유전공학부 (서울)	정년트랙	1	총장에게 위임함.	<복수학과 공동채용> 정: 자유전공학부(서울) 부: 자유전공학부(글로벌)
자유전공학부 (글로벌)	정년트랙	1		<복수학과 공동채용> 정: 자유전공학부(글로벌) 부: 자유전공학부(서울)

(나) 예정일 : 2025학년도 제1학기

(3)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호성 행정지원처장 : 학교법인 정관에 반영되어 있는 “<별표2> 한국외국

간인(서명)	김종철		이정운
--------	-----	---	-----

어대학교 직원 정원표”를 직종별 구분 없이 통합정원제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균형적인 조직 구성을 모색하고자 하며, 통합정원제를 통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직원사회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고자 함.

○ 이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직종별 정원을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인사 적체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므로 직급체계를 단순화하고 연봉제, 성과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직원 정원표 조정은 학교법인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고, 직원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직원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필요함. 직원노동조합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정관 개정이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통합정원제에 대한 직원노동조합의 서면 동의서 제출을 권고함.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3호 안건은 직원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보완한 후 재상정하겠음을 문자,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승인을 보류하다.

□ 정관 개정 승인사항

(가) 승인여부 : 승인 보류

(나) 사 유 : 직원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 보완

(4)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4호 안건은 안건 준비 과정에서 상위 관련 법령의 추가 개정사항이 통보되었기에, 관련 내용의 검토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추후 재상정 하겠음을 설명하고, 금번 이사회에서는 안건 상정을 철회함.

(5) 한국외국어대학교 위치변경계획 인가 관련 자문 용역계약 체결(안)

○ 김종철 의장 : 제5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이태욱 법인사무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위치변경 계획의 구체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은
--------	-----	---	-----

으므로 학문 특성에 맞춰 개설하는 것이 중요함.

- 마케팅에는 상품개발, 광고, 홍보 등이 포괄되어 있으므로, “마케팅광고”를 “마케팅”으로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명칭으로 변경 필요.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6호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제 개편 승인사항

(가) 승인사항

현행	변경	비고
마케팅·경영학부	경영학부	
지방행정·의회학부	폐지	


(나) 개편시기 : 2025학년도 제1학기

(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7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서연 기획처장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소속 직원 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으로 정했던 휴직자 처우, 육아휴직, 법정휴직 등을 직원인사규정에 신설·반영하고자함.

<주요 개정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추가
- 휴직기간 중 급여 지급을 신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료 등을 위한 휴직 평균임금 100% 지급
 - 장기연수로 인하여 대학이 유급휴직을 승인한 경우 평균임금 100% 지급
 - 업무수행상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 수행의 경우 평균임금 100% 지급
 - 업무수행 부상 이외 장기요양 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60%지급
 - 육아휴직 1~12개월 80만원, 13~18개월 무급
- 육아휴직 기간 18개월, 가족돌봄휴직 기간 90일을 반영하고, 유급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은
--------	-----	---	-----

○ 이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수행상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률을 위반해서 구속된 자에게 교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떠났을 때에도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은 정부 관리로 임명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성 있음.
-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법정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직원인사규정에 반영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외 기타 휴직사유에 대한 임금 지급은 타학교 사례, 법률 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추후 재논의하기를 요청함.

○ 김종철 의장 :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7호 안건은 학교 제출 원안에서 제29조 제2항 제1호를 제외하고 승인하겠음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8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을 수정하여 승인·의결하다.

□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사항

(가) 승인여부 : 수정 승인

(나) 수정사항 : 학교 원안 중 제29조 제2항 제1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사항 승인함.

(다) 시 행 일 : 2024년 9월 27일

* 불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8)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 김종철 의장 : 심의안건 제8호를 상정하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간서명 대상자로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이사, 윤규섭 감사를 선임하겠음을 발의하자, 참석이사 8인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	-----	---	-----

나. 보고사항


(1)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선출제도 관련 사항

- 김종철 의장 : 보고사항 제1호를 상정함.
- 이태욱 법인사무처장 : 학교법인은 1차 구성원 개별 의견수렴에 이어, 2024년 8월 28일 각 대학원 원장, 단과대학 학장 등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했음. 서신의 주요 내용은 총장 선출 법인 규정화 및 현 직선제를 포함한 간선제 등 총장후보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경영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보고함.
- 김종철 의장 : 총장 선출 절차(안)에 대해 이사, 감사님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화하고자 함.
- 이에 대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이사회는 총장선출제도 개선과 관련 구체적인 학내 상황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총장이 학내 분위기 등을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되겠음.
 - 학교법인으로 제출된 일부 의견은 각 구성원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차·부장협의회, 서울 및 글로벌 총학생회 등 각 구성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체 교수회의에서도 학교법인의 총장선출제도가 개선 의견 수렴에 대한 문제제기 등 강경한 분위기가 있었음.
 - 구성원들은 직선제를 선호하는 면이 있으며, 일부 교수들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관망하고 있음. 교수협의회는 직선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나아가 복수의 후보가 아닌 단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
 - 구성원들의 성명서는 설득력이 미흡하고, 현재 학교 상황과 관계없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사항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제안은 없었음. 현재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구성원들이 관망하는 자세로 소통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함.

간인(서명)	김종철		이태욱
--------	-----	---	-----

-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은 총장선출제도 이외에 이사장 중임제도 등 다른 사항으로 구성원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교수, 직원, 학생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들었음. 구성원들이 대안 제시 없이 반대를 하고 있으며, 관망하는 상황으로 보임. 학교 총장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재까지는 총장이 배제된 상태로 학교법인에서 의견을 수렴했기에 총장이 아닌 이사 자격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총장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총장에게 위임한다면 총장이 의견수렴을 진행할 수 있음.
- 이사장이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교수협의회 측에서 거부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9명이 공동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임. 학내 구성원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절차(안)를 마련한 후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안함.
- 이사회에서 총장선출제도를 마련하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개선 방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 이사장이 교수, 직원, 학생 대표들을 만나서 총장선출제도 개선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화를 한 이후에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최근에 학생회 등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반대 의견이 심하여 예기치 못한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었음.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화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사장이 구성원들을 만나서 기존 총장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설명하고,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음.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성원 대표들에게 총장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등을 설명하도록 할 것이며, 추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겠음을 설명함.

간인(서명)	김종철		학정근
--------	-----	---	-----

○ 이어 김종철 의장이 2024년 제8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4년 9월 27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김종철	김종철 (서명)
	이사	김동건	김동건 (서명)
	이사	김호정	김호정 (서명)
	이사	문휘창	문휘창 (서명)
	이사	박정운	박정운 (서명)
	이사	양인집	양인집 (서명)
	이사	이돈구	이돈구 (서명)
	이사	최맹호	최맹호 (서명)
	감사	배한영	배한영 (서명)
	감사	윤규섭	윤규섭 (서명)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	-----	---	-----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1조 ~ 제28조 (생략)	제1조 ~ 제28조 (현행과 같음)	
<p>제29조 (휴직사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자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2. 업무수행 이외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치료)을 위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 3. 병역법, 전시동원법, 기타 법에 의한 징·소집에 응하여야 할 경우 4. 장기연수로 인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학이 유급휴직을 승인한 자 5. 업무수행상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떠났을 때 7.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8.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 <p><항 신설></p>	<p>제29조 (휴직사유)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7 (현행과 같음) 8.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원하는 경우 <p>② 휴직기간 중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며, 이외는 무급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의 제2호 : 평균임금 60%를 지급 2. 제1항의 제8호 육아휴직 : 1~12개월 정액 80만원 지급(13~18개월 : 무급) 	<p>자구 수정</p> <p>항신설</p>
<p>제30조 (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맞추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29조의 2호, 8호 : 1년 3. (생략) 4. (생략) 5. 신설 <p>② (생략)</p> <p>③ 제29조의 8호에 의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며 그 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p>	<p>제30조 (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맞추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의 2호 : 1년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의 8호 : 육아휴직(18개월), 가족돌봄휴직(90일)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9조의 8호에 의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며 그 기간(유급휴직 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p>	<p>자구수정</p> <p>호 신설</p> <p>자구수정</p>
제31조 ~ 제53조 (생략)	제31조 ~ 제53조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5)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p>	부칙 신설

간인(서명)	김정철		박정오
--------	-----	---	-----